"Arise PNU, 같이 더 높게"

부 산 대 학 교

수신 지역기업 및 기관 대표이사 사장

(경유)

제목 2026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신청(모집) 안내

1. 귀 사(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우리 대학은 산업현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고 전공직무 관련 현장적응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배출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26학년도 겨울계절학기에도 현장실습학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귀 사(기관)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오니 **붙임의 모집 안내문과 현장실습 참여방법 안내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본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placement.pusan.ac.kr)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실습기관 신청(모집) 안내

■ 신청(모집)기한 : ~ 11. 19.(목)

■ 실습진행 : 12. 23.(수) ~ '27. 2. 28.(일) 기간 중 (표준)1개월 (자율)4주 -20일 이상 또는 (표준)2개월 (자율)8주 -40일 이상으로 운영

■ 운영방식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당연 가입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 가입 후 증빙서류를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업로드
- 현장실습생 직무수행 비율에 대한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보장 필수 (교육부고시 제2022-1호)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관련교육 25%, 직무수행 75%로 구성 / 기업부담 실습지원비 168만 원 이상(월 기준)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관련교육 40%, 직무수행 60%로 구성 / 기업부담 실습지원비 124만 원 이상(4주기준)

붙임 1. 부산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 안내문 1부.
2. 부산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참여방법 매뉴얼 1부.
3.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안내문 1부.
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1부. 끝.

부 산 대 학 교 총 장

부산대학교 총장인

주무관	이수진	팀장	박상준	행정실장	전결 2026.10.13. 권동현

협조자

시 행 현장실습지원센터-3465 (2026.10.13.) 접 수 ()

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 http://www.pusan.ac.kr

전화번호 051-510-1000 팩스번호 / placement@pusan.ac.kr / 공개

2026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

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재학 중 일정기간 동안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점이수, 추후 진로결정, 현장적응력 제고를 통하여 현장실무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부산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안내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관련교육 25%, 직무수행 75%로 구성 / 실습지원비 162만 원 이상(월) 지급**
 ▶ 산출근거 : (월)209시간 × 10,700원 × 0.75 = 1,677,225원 (168만 원)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관련교육 40%, 직무수행 60%로 구성 / 실습지원비 119만 원 이상(4주) 지급**
 ▶ 산출근거 : (주)48시간 × 10,700원 × 0.60 × 4주 = 1,232,640원 (124만 원)

1. 운영기준 : **1개월(4주) 혹은 2개월(8주) 단위**로 운영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실습기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대기업 등** 우리 대학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MOU 체결 및 참여가능 기업 (단, 1인 창조기업이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대학에서 판단)
3. 대상학생 및 선발기준
 - 4학기 이상 이수한 3학년 이상의 재학생* (초과학기자 가능)
 * 휴학생, 졸업유예생(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함) **참여 불가**
 - 전공 및 기타 : 각 실습기관의 요구 전공(복수전공 가능), 성적 및 관련 자격증
4. 학생 수혜
 - 학점인정 : 실습기간별 실습일수 기준 **최소 3학점 ~ 최대 6학점 의무 이수**
 - **기업부담 실습지원비** : **표준** 168만 원 이상(월 기준) / **자율** 124만 원 이상(4주 기준)

※ 실습기관에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100% 이상의 실습지원비(월 2,236,300원)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학교에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해당 최저임금액의 25%를 실습기관에 지급(환급)함
(교육부고시「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30조제5항)

□ 모집기간 : ~ 2026. 11. 19.(목)

1. 참여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placement.pusan.ac.kr)를 통하여 기한 내 온라인 신청
2. 선발일정 준수 : 차수별 지원학생이 누적되지 않으므로, **각 선발기간 내 반드시 선발 완료**

홈페이지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	▶ [마이페이지]→ [현장실습신청서 작성]→[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직무관련교육 및 직무수행 비율에 따른 주차별 실시계획을 상세히 작성

□ 추진일정

추진기간	내 용
~ 11. 19.(목)	**【기업】** 참여희망 실습기관 모집 및 온라인 신청서 등록
11. 20.(금) ~ 11. 24.(화)	**【학생】** 1차 현장실습 참여 지원
11. 25.(수) ~ 12. 4.(금)	**【기업】** 1차 선발(서류, 면접) 및 2차 추가모집 신청·등록 ☞ **선발, 탈락 여부 학생에게 즉시 고지**
12. 5.(토) ~ 12. 7.(월)	**【학생】** 2차 현장실습 참여 지원
12. 8.(화) ~ 12. 11.(금)	**【기업】** 2차 선발(서류, 면접) ☞ **선발, 탈락 여부 학생에게 즉시 고지**
12. 15.(화) ~ 12. 17.(목)	**【학교】** 참여확정 학생 수강신청(서류제출, 등록금납부) 및 상해보험 가입
12. 22.(화)	**【학교】** 참여확정 기업 및 학생 대면 사전교육 진행
12. 23.(수) ~ 27. 2. 28.(일)	**【학생, 기업】** 실습 진행 (기간 중 1개월(4주)-20일 또는 2개월(8주)-40일)

❶ 실습단위 : (표준)1개월 (자율)4주 단위 운영

❷ 실습일수 : (표준)1개월 (자율)4주 – **최소 20일** / (표준)2개월 (자율)8주 – **최소 40일** 이상 충족 필요

□ 현장실습 운영원칙 및 실습기관 유의사항

1. 운영 원칙 : 교육부고시 제2022-1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

가. (참여학생 안전 보장) 지도교수의 1회 이상의 방문지도 실시 및 학생 상해보험 가입

나. (기업 선발권 보장) 실습기관 자체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하여 직접 실습생 선발

다.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당연 가입) 가입 후 증명서류를 학교로 제출 ☞ 별도 안내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됨
> -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며, 그 외 다른 보험 가입 의무 없음
>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순수 실습생이므로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없음
> - **산재보험 가입(적용)기간은 실습기간 전체를 포함**해야 함 (**취득일**=실습시작일/**상실일**=실습**종료일 익일**)

라. (적절한 실습지원비 지급) 실습생 직무수행 비율에 따른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보장

마. (직무교육 및 멘토배정) 표준/자율 직무관련교육 비율에 따른 직무교육 보장 및 전담멘토 배정

2. 실습기관 유의 사항

가. 운영계획서(신청서) 작성 시 실습 직무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실습 직무내용을 기반으로 학생 요건에 관련된 모집전공 및 계열을 작성 **('전공무관' 기재 지양)**

※ 실습기관의 요청으로 2개 학기 이상(예:겨울계절학기-1학기) 동일 실습생을 모집하는 경우, 반드시 명시 바람

나. 학생 선발 완료 후, 당초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 등 내용(실습지원비) 변경 불가

□ 문의처 (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 051)510-1000, 3704 / intern@pusan.ac.kr / https://placement.pusan.ac.kr

학점과 경력을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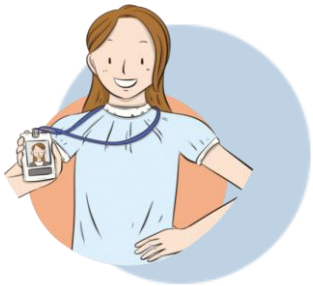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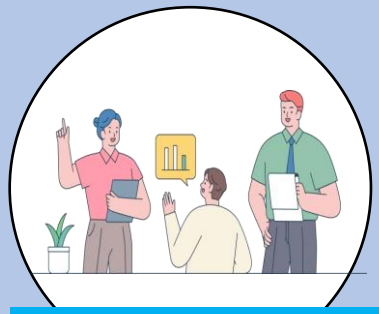
현장실습학기제란?

규정	내용
고등교육법 제22조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현장실습) 명시(2020.10.20.)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 현장실습 운영 표준화 기준 수립 명시(2020.12.22.)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 2	• 현장실습 지원비 산출 기준 명시(2021.6.15.)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 개정(2021.7.6.)	•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방법 명시 – 표준 서식, 프로세스 마련(실습운영 계획서 등) – 실습생에 대한 상해보험(대학), 산재보험(실습기업) 의무 가입 – 현장실습생에 대한 기업의 지급 금액 : 최저 임금의 75% 이상 – 현장실습생에 대한 정부지원 금액 : 최저 임금의 25% 까지 * 2022년부터 실습기업은 지원받을 국고지원비(LINC사업 등)를 포함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대학에 국고지원비 지급 요청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정규 학기 또는 방학을 활용, 학생은 전공 관련 기관(기업)의 실습을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관(기업)에서는 학생이 감당할 만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기관(기업)의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우수 인재를 사전 교육하고 선점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학생과 기관(기업) 모두에게 상호 유익한 산학협력 교육 모델(Co-op, Cooperative Education)

유형



표준현장실습학기제 Co-op

- 직무수행 시간이 실습시간 전체의 75%
 ※ 25%는 직무관련 교육(단,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 교육 10%)
- (월) 209시간 × 10,700 × 0.75 = 1,677,225원
 ※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원칙
- 근무일수 : 월단위기준
- 실습기관에서 지원학생을 기준별 자체 선발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1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직무수행 시간이 실습 시간 전체의 60%
 ※ 40%는 직무관련 교육
- (주)48시간 × 10,700 × 0.60 × 4주 = 1,232,640원
 ※ 최저임금의 60% 이상 지급 원칙
- 근무일수 : 4주단위기준
- 학교에서 발굴한 실습기관이 지원학생을 자체 선발



WIL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요건



실습기관 내
현장실습생
담당 멘토
배정 운영!

- ✔ 실습생 보건위생 및 안전 보장 가능
- ✔ 실습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 수행
- ✔ 자격취득 요건 충족을 위한 실습 수행 기관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대기업 중 MOU 체결 및 참여가능 기업

※ 단, 1인 창조기업이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대학에서 판단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속 근무

정규학기 3~4개월(12~16주)-60~80일 계절학기 1~2개월(4~8주)-20~40일

운영 방식

실습기관의 근로환경(일반 근로자)과 동일한 여건으로 실습 진행

- 개인사유(경조사), 회사 휴가, 법정 공휴일 등 실습기간 빠진 일수는 추가 실습 필요
 (필수 실습기간 충족)



- 국가재난 발생에 따른 출퇴근이 불가할 경우, 재택 실습으로 실 근무일수 충족



실습기관 담당자
통해 사전 신청 후

↓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26겨울계절학기 세부일정

기업	학생	기업	학생	기업	학생·기업	대학	실습
참여기업 모집 및 온라인 신청서 등록	학생 1차 지원	기업 1차 선발 (서류,면접)	학생 2차 지원	기업 2차 선발 (서류,면접)	참여확정 학생 수강신청 및 보험가입	참여확정 학생 O.T (대면)	실습진행
		2차 추가모집 신청·등록		별도매칭 진행 (최종 확정)			
~ 11.19.(목)	11.20(금)~ 11.24.(화)	11.25(수)~ 12.4.(금)	12.5.(토) ~ 12.7.(월)	12.8.(화)~ 12.11.(금)	12.15(화)~ 12.17.(목)	12.22.(화)	12.23(수)~ '27.2.28.(일)

※ 실 근무일 기준: 기간 중 1개월(4주-20일) 또는 2개월(8주-40일)

실습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ID :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정보 현행화

01. 기업회원가입

협약서 및 신청서 온라인 등록

02. 현장실습신청서 작성

서류, 면접 등 심사를 통한 적격자 선정

03. 학생선발(1,2차)

04. 담당멘토배정

원활한 직무수행 및 교육을 위한
실습생 담당 멘토 배정

05. 학생관리

실습일자별 출근부 관리 및 점검 등

06. 실습 마무리

기관평가서 작성 및 설문조사

실습종료



온라인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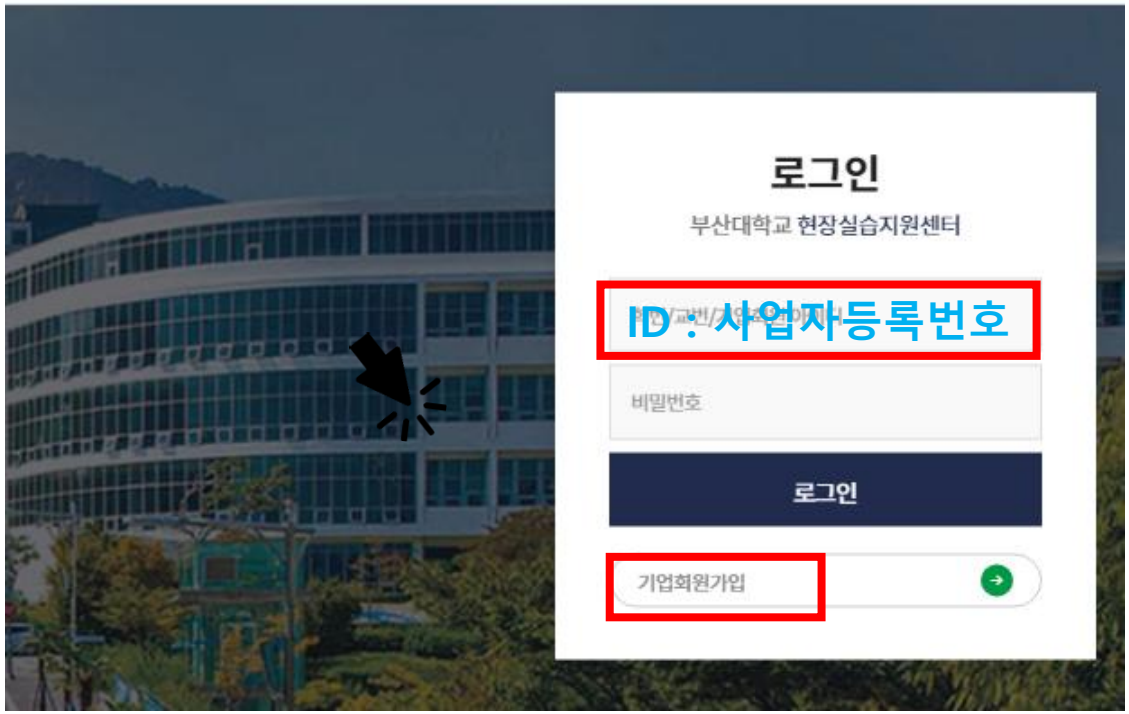
https://placement.pusan.ac.kr

01. 기업 회원 가입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센터로 연락

홈페이지 접속 → 기업회원가입 → ID: 사업자등록번호 → 센터 승인 후 로그인

현장실습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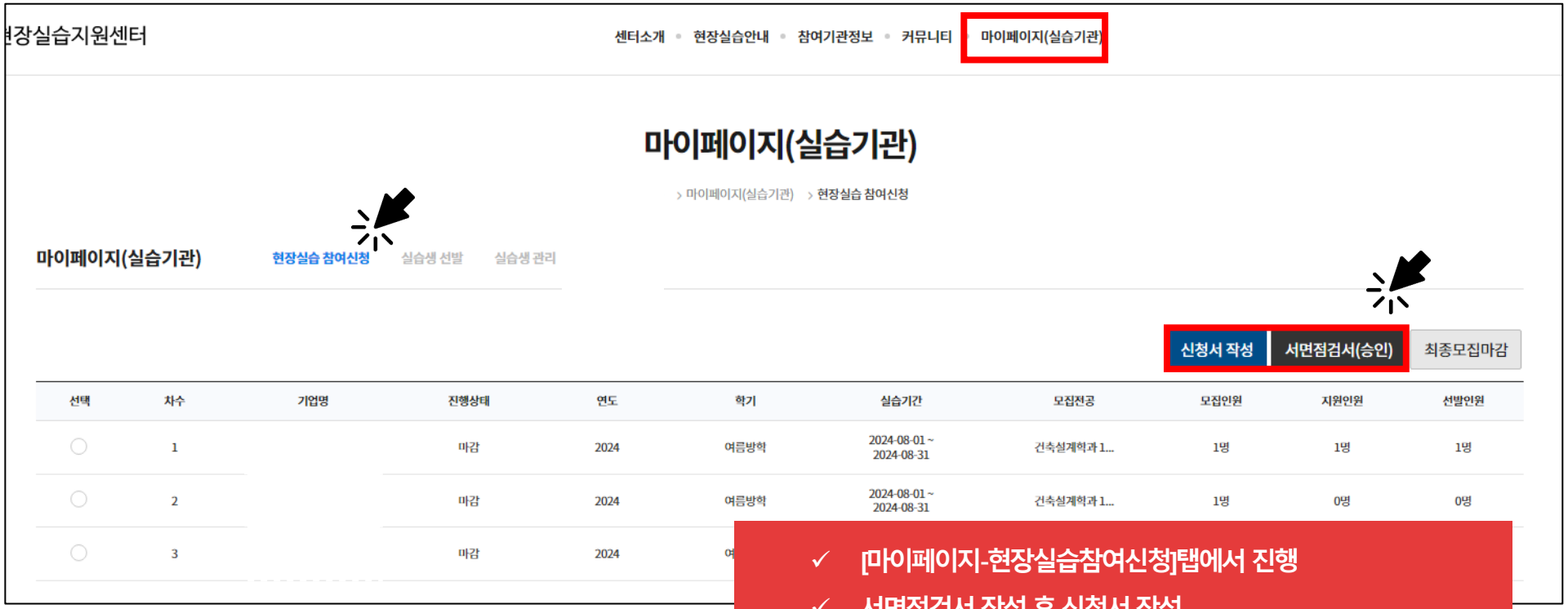


- ✓ [마이페이지-기업회원정보수정]을 통한 주기적 현행화 필수
- ✓ 담당자 변경시, 인계인수 철저
- ✓ 주요 안내사항의 메일전달에 따른 기업 메일 현행화 및 수시확인

온라인 매뉴얼

02.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현장실습신청서 작성 → 신 청



- ✓ [마이페이지-현장실습참여신청]탭에서 진행
- ✓ 서면점검서 작성 후 신청서 작성
- ✓ 신청서 작성 클릭 시 협약서 작성 후 운영계획서 등록

온라인 매뉴얼

02.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온라인 매뉴얼

02.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마이페이지(실습기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실습요청업체현황			
기관(법인)명	test 기업	영문기관명	testCompany
대표자명	홍길동	사업	
설립연도	2015-04-08	종업	
매출액(연간)	50505050원	부산	
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도매 및 소매업(45~47)>도매 및 상품 중개업>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사업장 소재지	부산		
홈페이지	http://www.test.com		
기관현황(구분)	중견기업	상장여부	코스닥
사업의 종류(업태)	정보통신업	사업의 종류(종목)	소프트
기관소개	123 (1).jpg 기관소개 자료가 있을 경우 **[마이페이지-기본정보 수정]**에서 등록 및 변경 가능합니다.		

✓ 운영계획서 상 기업정보는 자동연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 [마이페이지-기본정보수정]에서 진행)

기관 근로형태	
정규 근로시간	1일 8 시간 / 1주 40 시간
정규 근로일수	주 5일 / 근로요일 월-금

현장실습 담당			
부서명	010-1234-1234	성명	김가나
직위	실장	이메일	test@Test.company
연락처	010-1234-1234	휴대폰	010-1234-1234

온라인 매뉴얼

03. 학생 선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생 선발** → 선발 현황 확인



선발 및 탈락여부를 지원자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여, 원활한 매칭을 요청드립니다

✓ 지원한 학생들의 목록 및 신청서를 확인 (학생명 클릭)하여, 해당 기간에 선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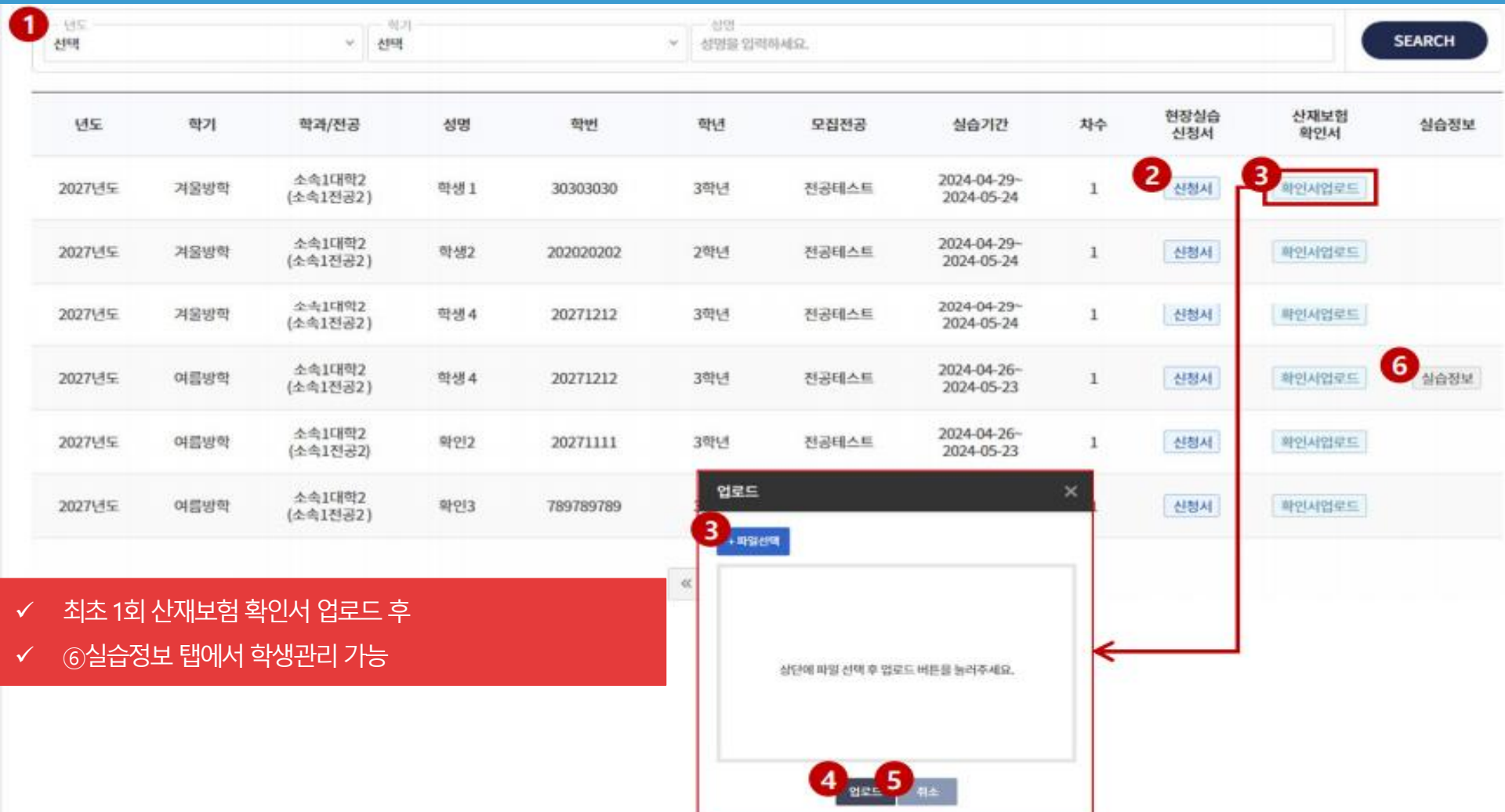
✓ 차수별 지원자가 누적되지 않으므로(자동 탈락) **차수별 선발기간 내에 반드시 선발 완료**

온라인 매뉴얼

04. 학생 관리

산재보험확인서 업로드

마이페이지 → 실습생관리 → 실습정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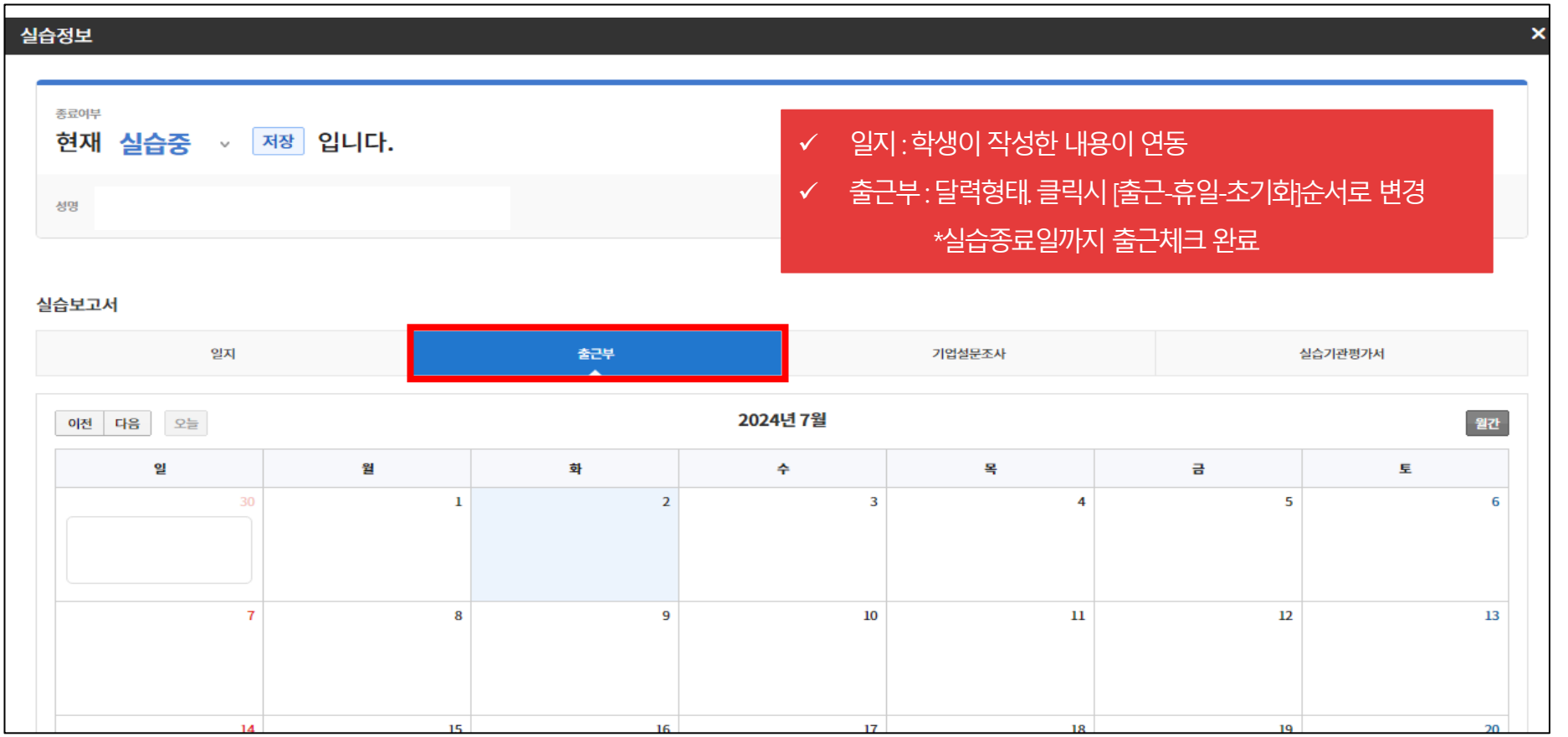
- ✓ 최초 1회 산재보험 확인서 업로드 후
- ✓ ⑥실습정보 탭에서 학생관리 가능

온라인 매뉴얼

04. 학생 관리

출근부 체크

마이페이지 → 실습생관리 → 출근부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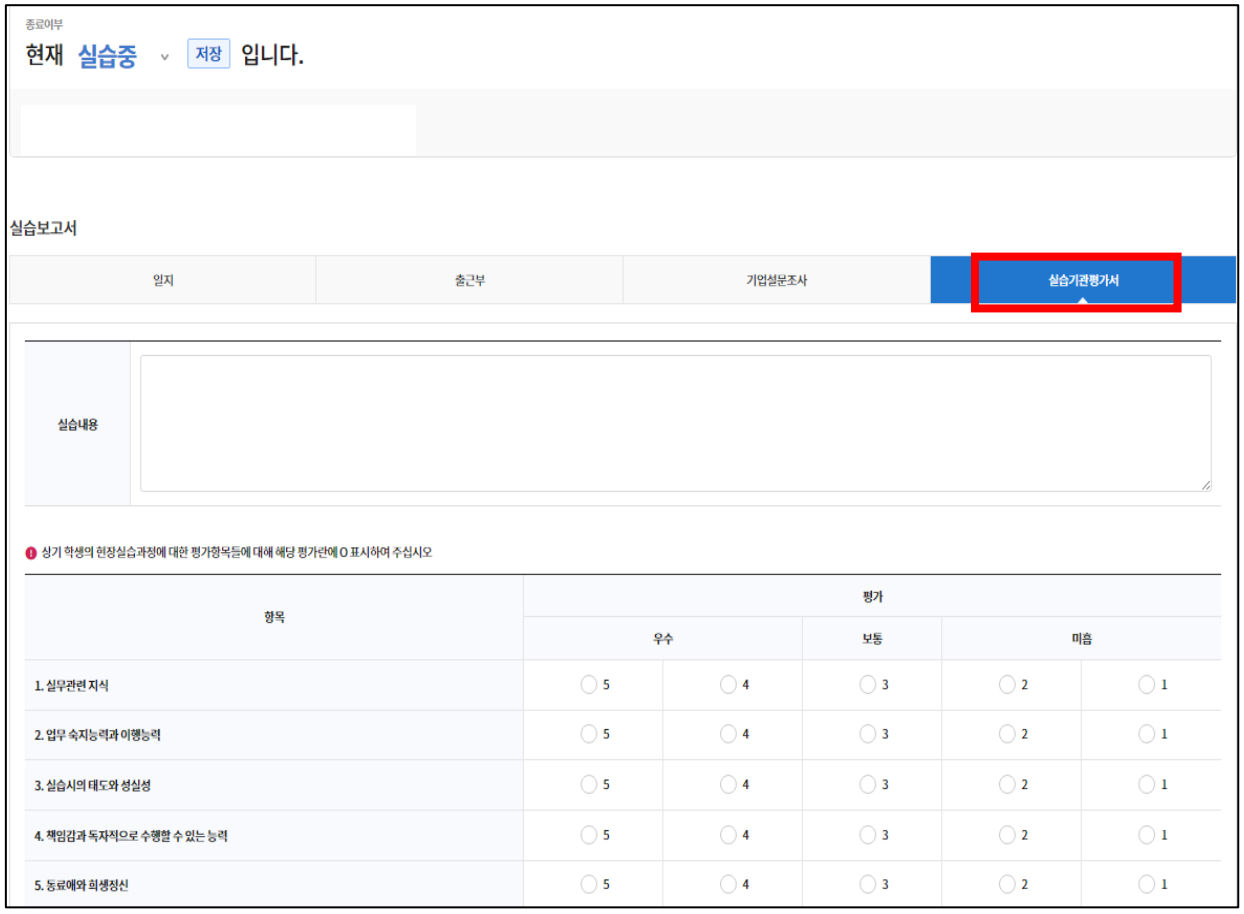


온라인 매뉴얼

04. 학생 관리

실습기관평가서

마이페이지 → 실습생관리 → 실습기관평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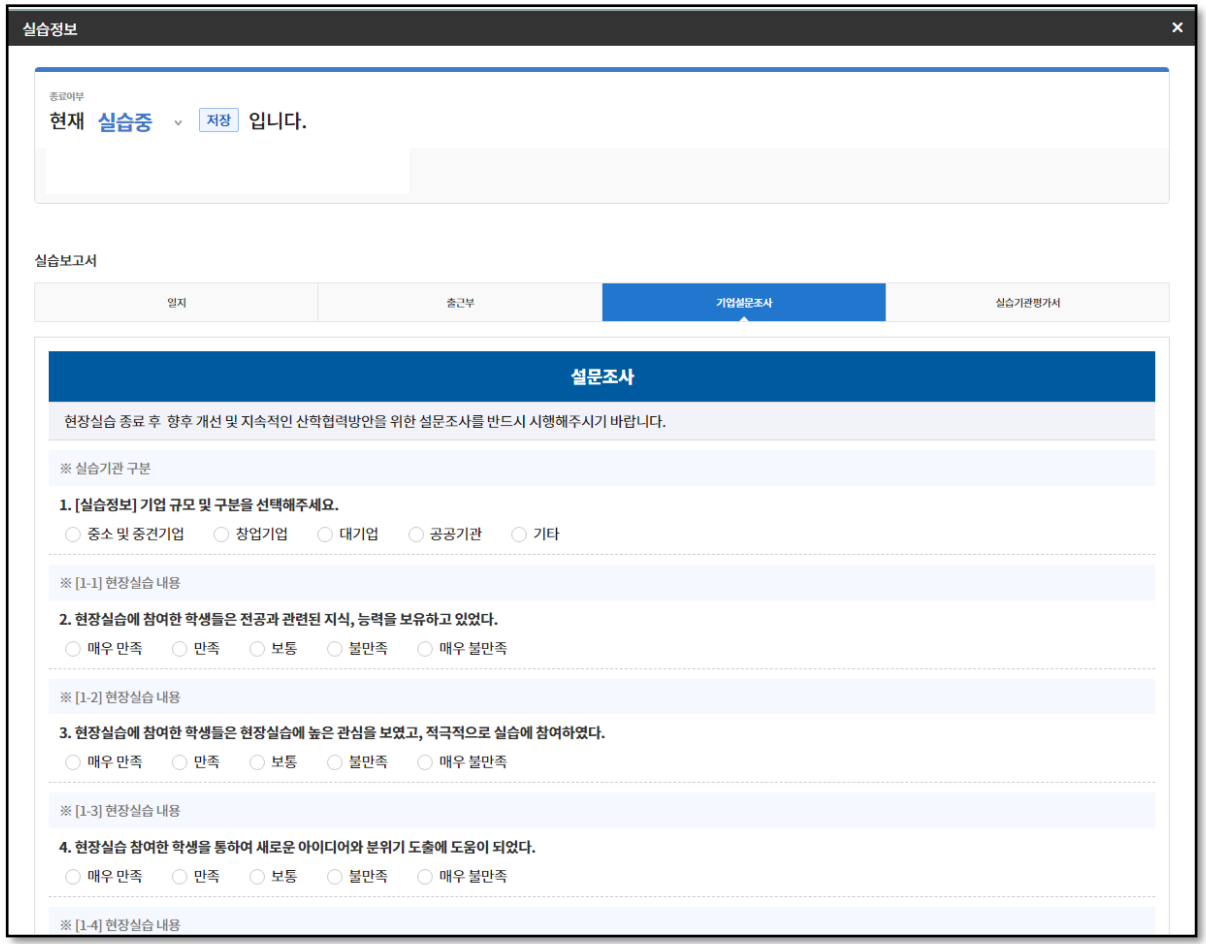
- ✓ 학생의 현장실습과정에 대한 평가항목에 우수-보통-미흡에 따라 5점척도 평가
- ✓ 향후 학점부여 및 현장실습 재수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

온라인 매뉴얼

04. 학생 관리

설문조사

마이페이지 → 실습생관리 → **설문조사**



- ✓ 해당학기 실습종료전까지 참여
- ✓ 향후 현장실습학기제 제도 개선 등 기업 만족도 분석에 따라 발전적 활용

기업 실습지원비 비과세안내

회계처리 유의 사항

✓ 기업 및 기관에서 부담하는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국세청 질의 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3.9.)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위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에도 실습기관의 착오로 **소득신고 및 과세징수가 된 경우, 실습생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환급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 실습지원비 환급신청

실습기간 종료 → 월별 실습지원비 지급 완료 → 환급 신청서 및 증빙자료 센터 제출 (실습종료시점에 공문발송예정)

첨부서류	- 실습지원비 명세서 1부. - 실습지원비 입금내역(입금증) 1부.(원본대조필 대표자 반드시 날인) - 통장사본 1부.(법인계좌)

✓ 실습기관에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학교에 환급을 요청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매 학기 실습종료 전, 환급 대상 실습기관에 일괄 안내메일 송부)

✓ 환급상한액 : 해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

Ex. 2027년 월 최저임금액

2,236,300원*0.25=559,070원

(실습생 1명 1개월 기준)

✓ 매 학기 참여기업 모집 기간 중 등록한 온라인 신청서 상의 실습지원비 기준

(실습 도중 금액 변경 불가)

[붙임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신청서(기관 · 기업용)

기관(법인)명		영문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			
홈페이지			
계좌번호	(OO은행) - - -	연락처 (담당자)	
예금주			
실습지원비 지급액 (기업→학생)	월 _____원 × ()개월 = 총 _____원		
실습지원비 신청금액 (대학→기업)	월 _____원 × ()개월 = 총 _____원		

실습학생 (총__명)	학과/전공	학번	성명	실습기간 (개월)	연락처	주요 직무
				'22.00.00.~ 0000.00.00. (0개월)	010-000-000	
				'22.00.00.~ 0000.00.00. (0개월)	010-000-000	

상기와 같이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하여 현장실습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첨부서류	- 실습지원비 명세서 1부. - 실습지원비 입금내역(입금증) 1부.(원본대조필 대표자 반드시 날인) - 통장사본 1부.(법인계좌)

부산대학교 총장 귀하

기타 유의 사항



① 기업-학생-학교 3자 협약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매칭 완료 후 부득이한 **변경 발생시** 반드시 센터에 먼저 상의

② 반드시 협약서 및 신청서 상 기재된 실습지원비를 (표준)월 단위, (자율)4주 단위로 실습기관 명의로 실습생에게 지급 (실습생에게 지급일 사전 안내 바람, 추후 이체내역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③ 학생관리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병행하여 안내 및 진행하므로, 담당자 메일을 수시 확인해야하며, 기업등록정보 현행화를 통해 소통 활성화

④ 현장실습은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직장 내 예절 준수

⑤ 실습 중 사고 예방에 유의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하며, 사고 발생(상해 또는 부상)시 학교(현장실습 지원센터, 510-1000)에 필히 신고 (학교 : 상해보험 가입, 기업 : 산재보험 가입)

⑥ 실습기관의 **보안 수칙사항을 안내하고,** 실습과 관련없는 개인정보수집을 금지하며 및 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 협조 요청
(실습생의 인적사항, 관련 문서, 사진 등의 유출 금지-핸드폰 사진 촬영 및 SNS 업로드 주의)

기타 유의 사항



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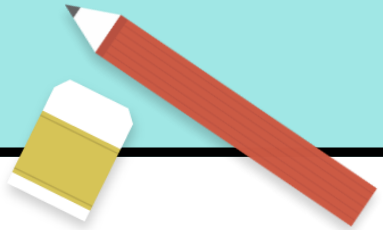
- 안전 규칙 준수
- 잠재적인 위험 요인 사전 제거
- 정기적 스트레칭 등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 재해.재난사고 발생 대비 비상구, 소화기, 피난로 인지

안전사고 처리 절차

051-510-1000

- 사고 발생 : 근로 중 안전사고 발생
- 초기 대응 : 응급조치 후, 필요시 의료기관 이송
- 학교(센터) 연락 :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상황 보고
- 사고 처리 : 실습지원비 정산, 보험 처리
- 후속 조치 : 부상 정도에 따라 업무조정 및 실습종료
- 보험처리 안내 및 서류처리 : 보험 및 사고처리
- ing

「주요 질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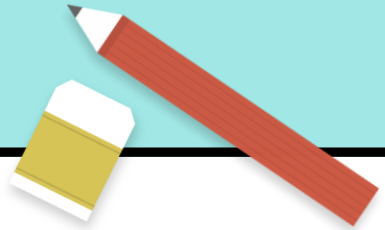
01. 이전 장학금 지급제도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학생 보호 및 학생 중심적 운영을 위해 여러 체험과 경험학습 형태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에 있습니다.
- 현장실습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실적'중심적 운영에서 비롯된 결과로 모든 체험.경험학습 형태가 '현장실습'이라는 '실적'으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여러 체험.경험 형태가 학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학생과 실습기관의 책임감있는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 유익 증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 그간 현장실습을 둘러싼 저임금 및 열정페이 이슈, 직무와 무관한 업무나 실질적인 근로수행 등과 같은 문제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요 이유였습니다.
-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 학생의 전공과 연관된 실습 기관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현장실습 참여기관은 학생들에게 감당할만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학생과 실습기관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가 정착되어 전체적인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사회 인식이 제고된다면 학생들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고, 기업에서도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조기에 검증하고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02. 실습기간(일수)별 학점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되는 경우 최소 실습기간은 1개월이며, 실제 출석(출근)일이 20일 이상으로 진행되어야 학교 규정에 따라 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됩니다. 학점은 실습기관의 평가표 및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학과별 운영지침에 맞춰 처리되며 가능한 학생 보호 측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습기관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학점인정에 반영합니다.
- 실습기간 설정 시 20일 또는 4주가 아니라 실습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공)휴일 등을 감안하여 월단위 또는 충분한 실습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 근무일수가 21일이 초과될 수 있도록 실습개시일 설정)

「주요 질의 사항」



03. 외국인 학생도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학교에서 개설되는 수업(과정)에 등록 및 수강신청 등이 발생하는 정규학위과정 및 교환과정의 외국인 학생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지위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므로 근로가능한 비자를 발급한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4. 실습 시작일은 반드시 해당학기 시작일에 시작되어야 하나요?

- 실습기간은 학교별로 정한 학기 기간내에 실습기관별로 편성하여 운영하면 되며, 필수 출석(출근) 일수를 채울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학점인정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단기 : 1개월(4주)-20일, 2개월(8주)-40일 이상 / 장기 : 3개월(12주)-60일, 4개월(16주)-80일 이상

05.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요?

- 산재보험 의무가입은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의거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2018.09.11.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현장실습생을 산재적용 시 근로자로 의제하여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 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1인 사업자(장)의 경우도 사업자 외 현장실습생이 근로자로 간주되어 적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
-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학교의 상해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현장실습학기제로는 운영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학기제로의 학점인정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051)510-1000, 3704, 7321
intern@pusan.ac.kr
https://placement.pusan.ac.kr